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31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7.

발 의 자 : 전용기 · 박정현 · 염태영
박홍근 · 민병덕 · 박선원
한민수 · 노종면 · 정준호
이건태 · 조계원 · 조인철
송재봉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자를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성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필요가 있음에도,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금고형에 미치지 못하여 강제퇴거조치를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법률에 공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.

이에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벌금 납부 후 또는 벌금 미납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에는 유치 기간이 종료한 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6조제1항제13호).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1항제1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벌금을 납부한 후 또는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에는 유치기간이 종료된 후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.

가.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행위

나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

다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경

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6조(강제퇴거의 대상자) ①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. 1. ~ 12의2. (생략) 1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<단서 신설> <신설> <신설> <신설>	제46조(강제퇴거의 대상자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12의2. (현행과 같음) 13. ----- ----- 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벌금을 납부한 후 또는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에는 유치기간이 종료된 후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. 가.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행위 나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

	<u>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</u> <u>상 성범죄 행위</u>
14. · 15. (생 략)	14. · 1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